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5.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5. 22.,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0. 5. 26.
-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20. 6. 15.)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 1) 제안이유

관내 소상공인·전통시장 홍보 및 공공목적 광고를 표시하기 위해 신규 설치하는 전자게시대 관련 규정과 수수료 감면대상에 정당현수막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일부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전자게시대의 광고물 표시기준 완화내용 신설(안 제18조제2항)
- 나. 수수료 감면대상에 정당현수막 포함내용 신설(안 제23조제3항제8호)

- 다. 전자게시대 표시 광고물 수수료 신설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수수료 적용기준 미비점 보완·정비 등  
(안 별표2, 별표3, 별표5, 별표6)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20. 2. 13.~ 2020. 3. 4.(의견 없음)
-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3. 검토의견(전문위원 신준호)

#### 가. 조례 개정 배경

새로운 광고 매체인 전자게시대를 활용하여 관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홍보 및 공공목적 광고를 표시하는데 전자게시대의 표출 완화와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정당활동 보장 차원의 정당 홍보 현수막 수수료 삭제 등을 신설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함.

#### 나. 주요 조문 검토

-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대한 사항 중 신호등과 같은 색깔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규정 신설(안 제18조제2항)
- 정치 현안에 대한 홍보 및 활동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게시대를 활

용한 현수막 설치시 수수료 감면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23조제3항제8호)

- 전자게시대 표시에 따른 광고물 수수료 항목 신설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수수료 적용기준 및 일부 용어 순화차원의 정비 (안 별표2, 안 별표3, 안 별표5, 안 별표6)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인 전자게시대의 표출 기준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4호에 따라 교통신호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 광고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는데,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홍보 등 공공목적 광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서울시 자치구별 설치사례〉

- 또한, 그 동안 정당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홍보 등의 현수막 기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의 논쟁이 상존했었음.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당법」 14)에서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

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용 지정게시대로 유도하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정당 현수막의 게침 논란 해결 등의 현실성을 반영한 사항으로 적극적 행정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임. 이번 기회를 통해 정당 현수막의 크기 및 재질 등의 규격과 게시 기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적극적 방안으로 보임.

-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기준의 경우 인근 주민의 전광판 야간 조명에 따른 눈의 피로, 스트레스 등의 민원과 야간 운전시 눈부심으로 인한 안전운전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sup>15)</sup> 등에 따라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빛 방사 허용기준<sup>16)</sup>을 엄격히 준수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 실태를 확인 점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사업자 선정 시에는 투명성을 확보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고, 전자게시대 설치 후에는 천재지변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전도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시설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전자게시대 수수료 산정은 서울시 자치구 평균금액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향후 수익 창출을 위한 수수료 인상보다는 좀 더 공공성을 기반으로 전자게시대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음.
- 기타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위법성은 없어 보임.

14) 제37조(활동의 자유)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5) 제11조 (빛방사허용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빛방사허용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